『위험물운송자』실무교육(선임자) 안내



(Ver 24.1)

	(voi = i, i)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근거		• 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과정명	• 위험물운송자 실무(종사자) 교육						
교 안 내	교육 대상	 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송책임자, 위험물운송운전자) ※위험물운송자란 이동탱크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관련 근거 : 법 제28조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 주기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 별표 24 제78조(안전교육)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별표24(종사 후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교육과정	교육장소(형태)	มว				
		위험물운송자 (혼용교육과정)	온라인 학습(사이버)	사이버교육 사전 수료 후,				
	교육 과정		안전원 교육장(집합)	안전원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료				
		위험물운송자 (집합교육과정)	안전원 교육장(집합)	안전원교육장 집합교육 수료				
		※ 혼용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 미 수료자 집합교육 참석불가						

•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교육 이수기한 해당분기의 1개월 전 발송) - 안전원 홈페이지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신청(사전접수) • 혼용교육과정 2 3 5 4 교육과정 및 일 선임대상처 확인 실무교육 온라민 학습 만전원 교육장 교육 흐름도 접수완료 (사이 원교변이사) 정·장소 선택 희미(교육)[[다 (집합교육 이수) • 집합교육과정 3 4 교육과정 및 일 실무교육 접수완료 만전원 교육장 (집합교육 이수) 선임대상처 확인 정 장소 선택 회위(파왕)(다남 교육 일정 •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실무교육 일정참고 교육 참가시 • 집합교육 : 신분증,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 사이버교육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전 종사자 자격취득 필수 구비 서류 • 교육내용 교육과정(업종)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관계법규 교육내용 • 위험물 운송 행정실무 •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집합) 교육 내용 • 질의회신 및 위험물 사고사례 • 위험물운송자제도 및 위험물운송자 업무 교육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점검표 및 위험물안전카드 작성 실습 (사이버) •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 위험물 성상 • 50,000원 실무교육 ※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안전교육의 수수료) 수수료 ★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실무 교육 •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수증 발급

실무(선임자) 교육 위험물운송자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관련 근거 : 법 제28조제4항

제28조(안전교육)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탱크자장소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 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 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송자 안전교육(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미이수자가 운송을 할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 등 행정사항

- 점검결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 운송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동탱크저장소 주요법령 : [붙임.1] 참조

❖ 신용카드 결제

교육일자 선 택



교육신청자 정보확인

교육신청자

정보확인



결제하기 (신용카드)



교육수수료

교육신청 완 료

교육신청

완 료

❖ 무통장 계좌 입금

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 주의사항

교육일자

선 택

결제방법 안내

1. 입금기한 :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후 오후 6시까지 (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무통장계좌

할 당

- 2.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3.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4.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fsi.or.kr접속>소방안전교육>실무교육>실무교육 신청 내역)
- 5.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	-------	------	---	----

교육수수료 환불

환불기준	환불금액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전액	
교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전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 환불시 주의사항
- 1.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 2.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변경·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영등포)	02-850-1378	경기지부 (수원 팔달구)	031-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	02-850-1392	경기북부지부 (경기 파주시)	031-945-3118		
부산지부 (부산 금정구)	051-553-8423	강원지부 (강원 횡성군)	033-345-2119		
대구경북지부 (대구 중구)	053-431-2393	충북지부 (청주 흥덕구)	043-237-3119		
인천지부 (인천 서구)	032-569-1971	전북지부 (전북 완주군)	063-212-8315		
광주전남지부 (광주 광산구)	062-942-6679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055-237-2071		
대전충남지부 (대전 대덕구)	042-638-4119	717.716 /7117 7117.11	004 750 0047		
울산지부 (울산 남구)	052-256-9011	제주지부 (제주 제주시) 	064-758-8047		

실무(선임자) 교육 위험물운송자

※ [붙임.1]

『이동탱크저장소』주요 법령

■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재」 일부 발췌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 (1)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 · 도지사(소방서장)
- (4)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시 · 도지사(소방서장)

기 제조소 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3)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8)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실무(선임자) 교육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채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5.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 6.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소 등 완공검사

- 제조소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마다 소방서장이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 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3.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완공검사의 시기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 보한 후에 신청한다.
- 5.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 탱크용적의 산정기준

1.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동저장 탱크"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